

‘전열기기류’의 위해성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서민층은 기름보일러보다는 전기장판 및 전열기기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전열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위험도 그만큼 높아져 가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음에도 안전에 대한 주의 의식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안전에 대한 관심을 기울임에도 발생하는 ‘전열기기’ 관련 사고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것은 중국 등 동남아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저가의 불법제품들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전기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사용의 위해정도가 높은 247개 품목은 반드시 지정 인증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 판매해야 하지만, 계절상품인 전열제품의 특성상 성수기 때 다량의 저가 불법제품을 양산하

여 시장에 집중적으로 유통시켜 수익을 올리고 잠적해 버리는 사업자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회장 김봉균)가 대표적인 전열기기제품 중 전기담요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불법제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중 유통중인 전기담요 제품들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중국산제품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부품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 제조 하는 업체들과 중국으로부터 중간 판매상(미상) 일명 ‘나까마’로 들어오는 제품들이 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중국 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안전인증 번호를 도용하는 업체들도 있었다.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업체들의 이익추구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소비자의 안전은 무시되고 있었으며,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하여 하루에도 많은 양이 판매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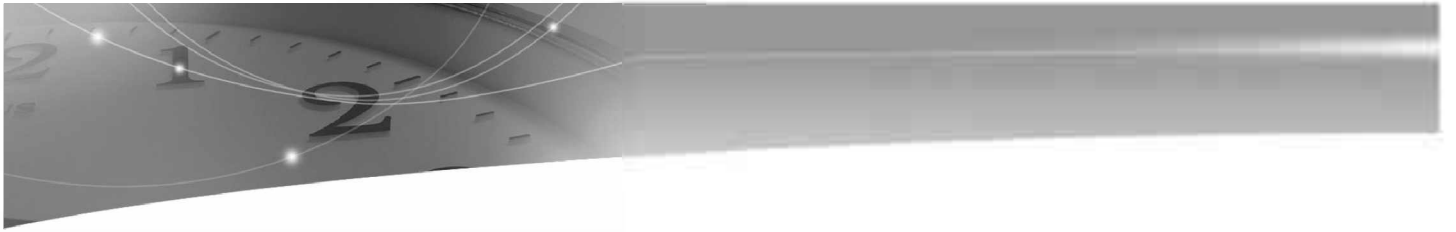


김 태 현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불법조사부
02-890-8300



〈전열기기의 예 : 좌-전기담요, 우-전기매트〉

한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전기



뜸질기로 인하여 화상까지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또한 불법제품(전열기기류)은 인지도가 높은 대다수의 인터넷쇼핑몰에서 인기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온라인 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인증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전인증 표시를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전열기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전기용품인지, 의료용기기인지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의 제품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불법 전기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는 지난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상반기에 불법 전기뜸질기 수입업체와 판매업체를 사법기관과 각 지 자체에 고발한 상태이다.

전열기기류는 인체에 직접 접촉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과열로 인한 화상이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열기기류 관련 안전사고를 품목별로 보면 전기장판이 전체의 47.9%(68건)로 가

장 많았고, 전기매트 33.8%(48건), 전기뜸질기 11.3%(16건), 전기요 4.2%(6건), 전기방석 2.1%(3건) 등의 순이었다. 또 접수된 안전사고 142건중 화재사고는 94건이었는데, 전열매트류와 같이 사용한 침구류 등이 연소되는 재산상 피해가 전체의 83%(73건)였고, 화상 10.6%(10건), 질식 6.4%(6건) 등 신체적 위해도 발생했다.

국민의 재산상, 인명상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전기용품의 경우 더욱 철저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전열제품의 경우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 철저한 사전 및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제조 및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단가경쟁으로 인하여 저가의 저질부품을 이용한 불법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며, 소비자는 저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지금의 문제점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는 지속적인 시장 감시 및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불법제품이 뿌리 뽑힐 때까지 관리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제도 개선과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표준 2008, 3

